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위탁사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운영에 일치시키고 추가적인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민간위탁 대상사무 추가(안 제4조제3항 별표)

<경제정책과 소관사무>

- 기능경기대회 위탁사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
⇒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·참가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
- 구인난과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형인턴제 운영
위탁 근거 마련
⇒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무에 대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수탁기관으로 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추가

4. 검토의견

가. 개정개요

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운영에 일치시키고, 신설사무인 맞춤형인턴제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기능경기대회 위탁사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·참가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, 구인난과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형인턴제 운영을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.

나. 검토의견

기능경기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·참가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실제적으로는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, 조례에서는 위탁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바 실질운영과 조례의 일치를 기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겠음.

또한 실업난과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정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맞춤형인턴제 운영사무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·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.